

『2025년 협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주관기관 모집공고(3차)

메이커 활동과 제조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5년 협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주관기관(컨소시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메이커의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교육,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여 메이커 저변 확대 및 제조 창업 활성화 촉진

□ 지원개요

- (선정규모) 총 3개 컨소시엄 내외
- (운영기간) 7.5개월 내외
 - * 점검 등을 통해 사업수행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수행 중 신청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내용) 특화분야 중심으로 협업을 통해 제조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시제품 제작부터 제품화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협업형(컨소시엄) 주관기관 지원 개요 >

구분	주관기관 구성	
협업형 (컨소시엄) = 대표기관 + 협업기관	대표기관	협업기관
	1개	2개

* '25.1.1. 기준 메이커 스페이스(舊 메이커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주관기관 신청 불가

- (지원예산) 컨소시엄당 6.3억원 내외
 - 컨소시엄 주관기관별 역할에 따라 대표기관 최대 4.5억원, 협업기관 최저 0.7억원 범위 내에서 적정 예산 구성
 - * 예산 구성 시 컨소시엄 주관기관 간 역할 및 협의에 따라 범위 내에서 자율 구성
 - **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조 창업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컨소시엄 운영에 필요한 '경상보조' 지원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불가)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시제품 제작, 제품화 등을 위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제조창업 활성화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관(기업)
 - * '18~'20년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舊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관(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나, 동 사업에 사업수행 중 중단·포기한 기관(기업)은 참여 불가
 - 대표기관은 반드시 1개 기관(기업)으로만 지정
 - 협업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동일 사업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동일 대학과 산학협력단, 동일 기관의 지부 및 센터는 한 컨소시엄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중복 참여·지원은 불가
 - * 대학의 경우 다른 지역 캠퍼스는 사업 신청 가능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포함)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 * 주관기관, 참여기관 간 역할을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계획서에 기재

- (주관기관)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주관기관(협약 및 정산 주체)을 말하며, 대표기관 및 대표기관과 협업하는 협업기관을 포함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관
- * 공간·장비 제공, 인력 지원, 대응자금(예산) 지원 등으로 참여 가능(참여확인서 필수 제출)

□ 신청 제외 대상

- 대표기관 및 협업기관으로 신청하는 기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 신청을 제한 (각 기관의 대표자 포함)

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② 법인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25.5.2.)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③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25.5.2.)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④ 모집 공고일 기준('25.4.23.)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의 해약' 또는 사업 최종평가 결과 '실패' 또는 이에 준하는 판정을 받은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⑥ 모집 공고일 기준('25.4.23.)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⑦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⑧ 2024년 교육부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 사업수행년도(2025년)에 교육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사업 중단 가능

⑨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3

신청요건

1 전용공간 확보

- (공간면적) 대표기관은 1,000㎡ 이상, 협업기관은 300㎡ 이상의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전체(컨소시엄) 전용면적의 합은 1,600㎡ 이상일 것
- 사업 신청 시 전용공간*(다른 목적으로 이용 불가)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필수
- *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 수행만을 위한 공간으로 본 사업 외 타 사업수행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불가
- (공간구성) 메이커 스페이스 전용공간은 시제품 제작 및 제품화 등을 위한 작업 공간, 교육 공간,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

2 사업 수행을 위한 자원 확보

- (대응자금) 총 사업비의 40% 이상 대응자금(현금 15% 이상, 현물 25% 이하) 매칭·납부 필수
- *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규모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기관별 대응자금 매칭 대응
-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舊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정부지원금으로 구입한 장비 등은 대응자금으로 불인정
- 대응자금(현금 또는 현물)은 지자체·유관기관·민간 등의 출연자금과 자체재원 모두 인정
- * 단, 지자체·유관기관에서 대응자금을 지원할 예정인 경우, '25년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 협업형 주관기관 운영지원을 위한 대응자금 투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대응자금(현금, 현물) 산정기준(안) >

구 분		대응자금 산정기준
현금 (총사업비의 15% 이상)		• 대응자금 확보 증빙서류 제출 - 통장 입금내역서, 대응투자 약속서 등
현물 (총사업비의 25% 이하)	토지 및 건물 (전용공간)	• 전용공간 연간 사용료의 월 산출액 × 운영기간 개월수 - 전용공간 연간 사용료 : 공시지가의 20% 이내 (공시지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등 공식적 인정금액의 20% 이내) * 임차의 경우, 실 소요경비
	인건비	•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 개월수 × 참여율 - 근무년수 1년 미만 : 최근 3개월 평균급여 총액으로 산정
	기자재	• 기자재 인정가액의 월 산출액 × 운영기간 개월수 - 기자재 인정가액 : 구입 5년('20.4.23. 이후) 이내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 * 기자재의 감가상각 종료일이 협약 시작일('25.5월)보다 이전이어서는 안됨

*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에 직접 활용하는 현금·현물만 인정

3 운영역량

- (전담인력) 대표기관 및 협업기관은 사업운영·관리를 위해 총 6명 이상의 전담 인력(총괄책임자 제외)을 구성하여야 함

* 전담인력 구성요건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완료되어야 하며 채용계획으로 대체 불가

< 전담인력 구성 예시 >

구분	대표기관	협업기관	협업기관	합계
전담인력 수	4명	1명	1명	6명

* 대표기관 및 협업기관 최소 전담인력 1명 이상 배치

- 대표기관은 사업 총괄책임자(이하 PM)를 필수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 운영·사업비 집행·결과보고 등 사업 운영 총괄을 담당

- (공간운영)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간으로 운영 (특정계층 및 대상 폐쇄적 이용 불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업 운영

* 협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사업 운영이 상이할 경우 협약 해지 가능

4

주관기관 의무 및 역할

1 특화 분야 지원

- 협업형 주관기관(대표기관, 협업기관)이 선택한 특화분야*의 제조(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

* 특화분야는 로봇, 의료기기, 모빌리티 등 구체적인 기술·산업 분야로 선택하며, 대표·협업기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예시 : 특화분야 관련 연구·개발 실적 및 전문가 보유 등)

- 대표기관의 특화 분야와 동일·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2개의 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예시 : 특화 분야가 의료기기일 경우 → 의료기기 분야와 관련된 협업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2 메이커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대표기관 및 협업기관이 보유한 역량, 여건, 지역 환경 등을 활용하여 제품화 지원 및 메이커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대표기관의 경우 지역 메이커 스페이스 네트워킹, 메이커 전문가 교육,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협업 또는 개별 프로그램으로 필수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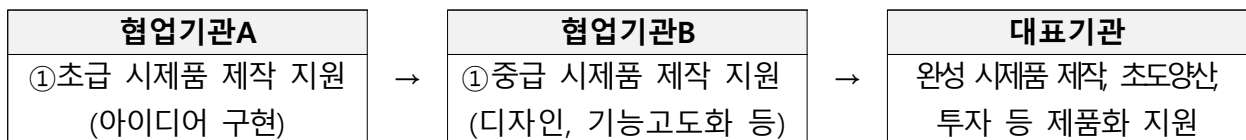
* (참고) 메이커 스페이스 협업형 주요 기능 참조

- **협업 프로그램** :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선 및 제품화 지원, 제조업체 매칭 등 제조 창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5개 이상)

* 협업 프로그램 기획 시 단순 업무 분담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지양(예시 : A기관 모집, B기관 평가, C기관 교육)

** 대표기관 및 협업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운영하여야 함

< 협업 프로그램 예시 >



- **개별 프로그램** : 각 구성기관별(대표, 협업) 특화 분야·강점·전문성,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운영 (2개 이상)

3 기타사항

- 인력, 장비, 공간 및 운영 프로그램 등 메이커 스페이스 정보를 메이크올(www.makeall.com)에 실시간 업로드
-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의 계좌를 필수 개설
-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PMS)을 통한 사업비 지출 및 증빙 제출 등 처리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5. 4. 23. (수) ~ '25. 5. 2. (금), 16:00까지

< 신청 시 유의사항 >

- 1) **16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제출 및 접수는 신청기한 내 필히 완료하여야 함(마감 이후 추가 제출·수정 불가)
- 2) 접수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3) 반드시 접수 기한 내에 '제출 완료'하여야만 접수 처리되며, "제출완료" 후에도 접수 마감 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방법)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접속 → 창업사업통합 정보 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세부사항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① 'K-startup' 누리집 접속 → ② 회원가입**(대표기관 **대표자 명의**) → ③ k-startup 로그인 → ④ 사업신청관리 클릭 → ⑤ 「2025년 협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주관기관 모집 공고(3차)」 클릭 → ⑥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⑦ 기본정보 입력(1개 유형 선택) → ⑧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용량 제한 500MB) → ⑨ 제출 → ⑩ 사업신청내역조회에서 신청 확인(접수상태 '제출완료' 확인)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K-startup 누리집 가입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 인증 필요. 개명인, 외국인 등은 실명(개명)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하여 K-startup 가입과 사업 신청에 제한되므로 유의(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제출 공문,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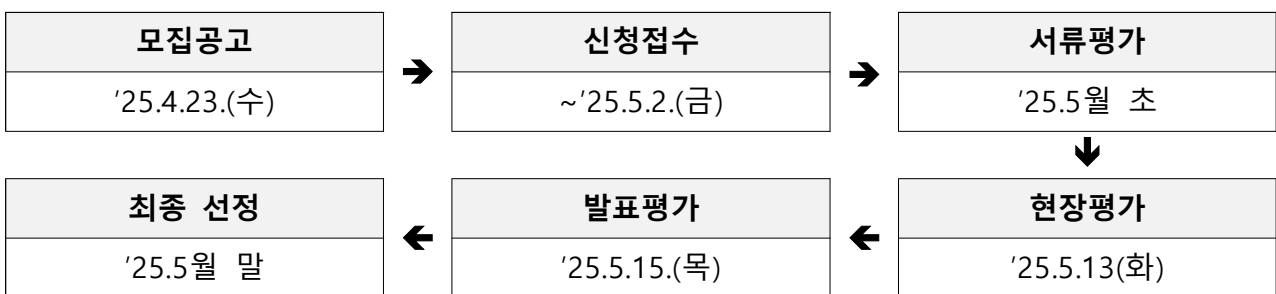
6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방법 및 절차

- **요건검토** : 전용공간 및 대응자금 확보, 신청 제외대상 여부 등 기본 신청요건 및 자격 충족 여부 등을 검토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현장평가** : 공간확보 및 활용 현황, 장비·기자재 현황, 전담인력 구성 완료 등 평가
 - **발표평가** : 사업 이해도, 운영전략, 협업전략, 사업관리 등을 중심으로 사업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역량평가
- * 평가시간 : 3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 서류평가 또는 현장·발표평가의 합산 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탈락 처리

< 협업형 주관기관 선정 평가일정(안)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기관별 발표평가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 최종선정

- 현장평가(20%)와 발표평가(80%)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 후보기관을 결정하고,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업형 주관기관 최종 선정 확정

□ 평가지표(안)

< 협업형 주관기관 선정평가 기준(안) >

구분		평가 지표															
기본요건 충족 여부 (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요건 충족 여부(전담인력 조성, 자원, 공간면적, 필수 프로그램 등) ▶ 신청자격 충족 여부(신청자격 및 신청 제한 해당 여부) 															
평가 항목	사업이해도	▶ 사업계획 및 추진 전략(체계)의 적절성 및 구체성, 제조 창업 활성화의 파급성, 협업기관의 역할 및 의지 등															
	운영전략	▶ 운영 프로그램 차별성, 공간·장비 등 제조 지원시설 운영계획의 적절성, 제조 창업 활성화 지원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시제품 제작, 제품화 등), 제조 창업지원 성과 창출(시제품, 제품화, 투자, 판로 등) 전략의 타당성, 안전 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전담인력 및 인력 운영의 전문성 등															
	협업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 창업 지원을 위한 대표기관-협업기관 간의 협업계획의 적절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등 ▶ 지역 내 메이커 스페이스 및 창업지원기관(창업보육센터(BI), 1인창조센터, 중장년센터 등) 등 외부 기관과의 협업계획의 추진 등 															
	사업관리	▶ 예산편성(현금+현물)의 적절성, 사업비 집행관리의 투명성, 성과 창출 및 성과관리의 타당성 등															
서류 평가	가점 (3점)	▶ 대표기관 및 협업기관의 전용공간이 모두 동일 권역*에 소재한 경우 * 동일 권역 : 6개 권역(①서울, ②인천·경기·강원, ③대전·세종·충북·충남, ④대구·경북, ⑤광주·전북·전남·제주, ⑥부산·울산·경남)															
현장 평가 (정량)	공간 면적 (10)	<table border="1"> <tr> <td>공간 면적</td> <td>총합 2,200㎡ 이상</td> <td>총합 2,000㎡ 이상 2,200㎡ 미만</td> <td>총합 1,800㎡ 이상 2,000㎡ 미만</td> <td>총합 1,600㎡ 이상 1,800㎡ 미만</td> </tr> <tr> <td>배점</td> <td>10점</td> <td>8점</td> <td>6점</td> <td>4점</td> </tr> </table>	공간 면적	총합 2,200㎡ 이상	총합 2,000㎡ 이상 2,200㎡ 미만	총합 1,800㎡ 이상 2,000㎡ 미만	총합 1,600㎡ 이상 1,800㎡ 미만	배점	10점	8점	6점	4점					
	공간 면적	총합 2,200㎡ 이상	총합 2,000㎡ 이상 2,200㎡ 미만	총합 1,800㎡ 이상 2,000㎡ 미만	총합 1,600㎡ 이상 1,800㎡ 미만												
	배점	10점	8점	6점	4점												
인력 운영 (5)	▶ 전담인력 : 대표기관 및 협업기관의 전담인력 수																
장비·기자재 활용 (5)	▶ 시제품 제작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장비·기자재																
	인정	3D프린터, 사출기, CNC, 레이저커터 등															
	불인정	소프트웨어, 부품, 공구, 약세사리, 사무기기(노트북, 카메라, 청소기, 청정기 등), 시제품 제작 및 가공 목적 외 기기 등															
	▶ 배점																
	<table border="1"> <tr> <td>장비·기자재 수</td> <td>70개 이상</td> <td>60개 이상 ~ 70개 미만</td> <td>50개 이상 ~ 60개 미만</td> <td>40개 이상 ~ 50개 미만</td> <td>40개 미만</td> </tr> <tr> <td>배점</td> <td>5점</td> <td>4점</td> <td>3점</td> <td>2점</td> <td>1점</td> </tr> </table>	장비·기자재 수	70개 이상	60개 이상 ~ 70개 미만	50개 이상 ~ 60개 미만	40개 이상 ~ 50개 미만	40개 미만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장비·기자재 수	70개 이상	60개 이상 ~ 70개 미만	50개 이상 ~ 60개 미만	40개 이상 ~ 50개 미만	40개 미만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상기 선정평가 기준(안)은 실제 평가 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신청기관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신청·선정기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사업 운영지침, 협약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신청은 대표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 가능
 - * 대표신청기관의 장 (협업기관의 장 명의로 신청 불가)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제출 및 접수는 접수기간 내(~'25.5.2.(금), 16:00)에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 제출서류 등에 누락·착오가 있더라도 신청 마감 이후 수정·보완·교체 등 일체 불가
-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명시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선정 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협약 이후 발견된 경우 협약 해지, 제재 조치 가능
- 발표평가는 대표기관의 PM이 직접 참여·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재원(대응자금)의 확보(입금완료)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행하여야 함
 - * 의무사항 이행내용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협약체결 시 제출
 - ** 기한 내 신청 요건 미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중도 해지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표기관이나 협업기관으로 신청하는 기관 중 1개 기관이라도 결격사유 해당 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정 이후에도 협약 취소 가능
- 선정된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의 계좌를 필수로 개설 하고,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 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수행 불가 및 협약해지 가능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 관리시스템(PMS)’을 통해 관리 운영됨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 환수 및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에 대한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으나, 타 지원사업에서 중복지원을 금하는 경우 지원 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의 확인 필요
 - * 단 '25.1.1. 기준 메이커 스페이스(舊 메이커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주관기관 신청 불가
- 선정평가 결과 적합한 기관이 없을 시, 선발하지 않거나 선정 예정 규모와 달리 선발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1회 신청 가능

8**문의처**

- (신청·접수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정책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044-204-7672, 7606
- (사업 문의)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 044-410-1958~59, 62, 64
- (온라인 상담) K-Startup 홈페이지 - Quick Menu - 상담하기

9**사업설명회**

- (개최일시·장소) '25. 4. 25.(금), 13:30~ /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 3층 한양룸

* 상세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9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 / 주차 비용 지원 불가

□ 제조창업 활성화 지원

- (지역 협업) 지역 내 메이커 스페이스 간 네트워킹을 통해 협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제조 창업 및 메이커 활성화에 기여
 - * 대표기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역창업 협의체에 참여하고, 필요시 지역창업 협의체 운영을 지원
- (특화 분야) 특화 분야 창업기업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특화 산업 양성
- (시제품 제작) 메이커 스페이스 전용공간에 구축된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혁신적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 (제품화 지원) 내부 시설·장비와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디자인 개선, 초도양산, 투자유치 연계 등 제품화(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 제품화 지원 등을 통해 창업 촉진 및 신규초기 창업자 안정적 제조 창업 지원

□ 메이커 스페이스 프로그램 운영

- (협업 프로그램) 메이커 간 장비, 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협업 프로그램 운영하여 메이커의 제조 창업 촉진
- (개별 프로그램) 우수 메이커 발굴, 장비 활용 지원 및 교육, 시제품 제작 등을 제공하여 메이커 활동과 제조창업 지원
- (창업지원기관 협업) 지역별 창업지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투자 유치, 양산 등 제조 창업 촉진 활동을 유기적으로 지원

□ 메이커 교육

- (메이커 인스트럭터 교육) 메이커 전문가(인스트럭터) 양성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전담인력 대상 제조장비 활용 및 프로그램 교육
- (메이커 교육) 제조 창업에 필요한 설계기술, 장비 활용 등 제조 창업자 아이디어 구현에 필요한 필수 교육